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통·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

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의 별지1호 현역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에는 고유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